##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86 발의연월일: 2021. 6. 4.

발 의 자:최형두·강기윤·김영식

권명호 · 정운천 · 태영호

김성원 · 이종성 · 박성민

엄태영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'특별자치시장'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4항 중 "광역시장·도지사"를 "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판로지원사업) ① ~ ③	제26조(판로지원사업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	4
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	
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	
별시장· <u>광역시장·도지사</u> 및	<u>광</u> 역시장·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	<u>· 도지사</u>
지사"라 한다)와 공동으로 국	
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	
업을 실시할 수 있다.	